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416호
----------	-------

2016. 7. 20.(수)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6년 6월 29일
- 회부일자 : 2016년 6월 30일

다. 상정일자 : 2016년 7월 13일

-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수정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서승우 기획관리실장)

가. 제안이유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 주민참여예산연구회와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근거마련 등 위원회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규정 신설(안 제11조)

-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함
- 주민참여예산연구회 및 운영협의회의 역할 및 운영방법 규정 신설
(안 제18조, 제19조)
 - 연구회 및 운영협의회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구성 및 역할, 운영방법 등 세부사항 등을 규정

3. 검토보고 요지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오범진)

-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 제정되었음.
- 동 조례안은,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 신설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협의회 설치
 -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구성·운영 등 조례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과 검토의견
 - 안 제11조제3항은, 위원회 위원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함.
(현행) ~ 연임할 수 있으며,
(개정) ~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동 개정 조항은,

위원회 위원은 예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충청북도 예산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이면 누구나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의 자격요건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재정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참여예산제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즉, 개정을 통해 위원회에 참여하는 도민의 수가 확대되고, 예산교육을 통해 도정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되며, 대부분 타 시·도에서도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안 제11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한 규정과 관련해 적용대상 및 시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바,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안 제13조는,**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총 6개 분과(일반행정, 복지여성, 문화체육, 경제환경, 농정, 안전건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과별로 위원회 위원들이 각각 10명씩 배정되어 해당 도 실·국과의 개별 회의를 통해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제출, 주민의견 우선순위 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분과위원회는 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주민의견수렴 절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해당 도 실·국에 전달하는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바, 분과위원회의 설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기능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사료됨.

- **안 제18조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

⇒ 현행 조례 제18조에 연구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들로부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연구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2015년 4월 당연직(분과위원장), 6명과

위촉직(지방재정분야 전문가, 사회단체 관계자 등)위원 8명 등 총 14명을 위촉해 운영 중에 있음.

※ 現 연구회 위원 중 위촉위원 임기 : 2015. 4.23 ~ 2016. 12.31

- 현행 조례 제18조에는 연구회를 둘 수 있다는 근거만 있을 뿐,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연구회의 구성·운영 및 기능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연구회 위촉직 위원은 현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이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 풀(Pool)이 많지 않고, 연구결과의 누적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연구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 한 차례만 연임으로 제한하는 것은 제반 현실과 연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現 연구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1년 8개월로 위촉되어 있어, 개정안에 규정된 2년에 미치지 못하는 바, 현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어 임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19조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운영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함.

⇒ 운영협의회는 위원회의 대표성을 가진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6명)으로 구성하여,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을 조정하고, 일정 등과 관련된 사안들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행정 및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운영협의회의 심의 기능이 위원회 기능 중 일부를 침해하지 않도록 운영협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다음 번 개최되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설명하도록 시행규칙 등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별표]의 분과위원회 소관부서의 주관실국을 현행 균형건설국에서 재난안전실로 변경함.

- ⇒ 도 분청에 재난안전실이 2015년 7월 설치되어 도 재난안전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하고 있는 바, 분과위원회 안전건설분과의 주관실국을 현행 균형건설국에서 재난안전실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현행) 균형건설국(균형발전과)
 (개정) 재난안전실(안전정책과)

<참고자료>

□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현황

○ 구성현황

- ▶ 인 원 : 60명
- ▶ 성 별 : 남성 33명, 여성 27명 (여성위원 비율 45%)
- ▶ 지역별 : 청주 36명, 비청주권 24명 (비청주권 비율 40%)
 충주 4, 제천 4, 보은 3, 옥천 2, 영동 1, 증평 1, 진천 5,
 괴산 2, 음성 1, 단양 1

○ 위원 위촉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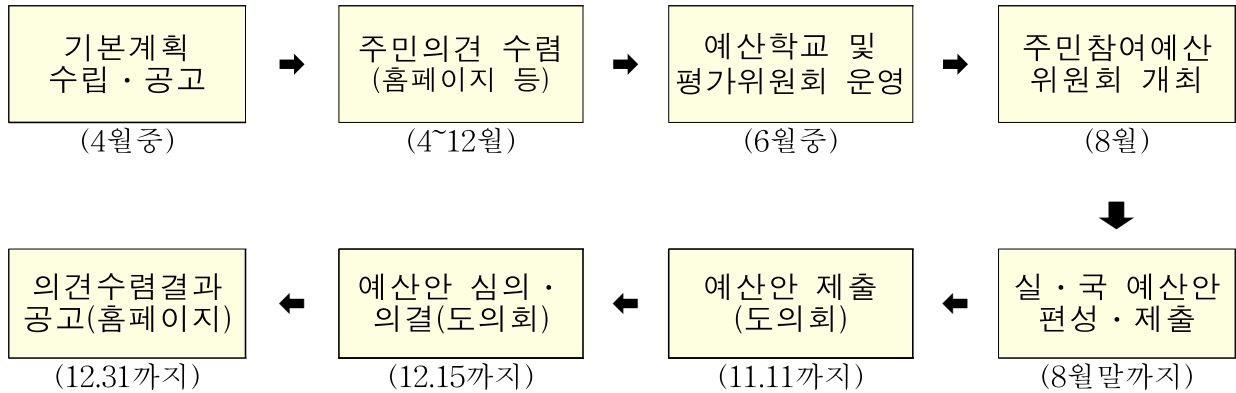
공개모집	시장·군수 추천	비영리민간단체	실국·부서 추천
22명	11명	13명	14명

- 임 기 : 2016. 2. 24. ~ 2018. 2. 23.(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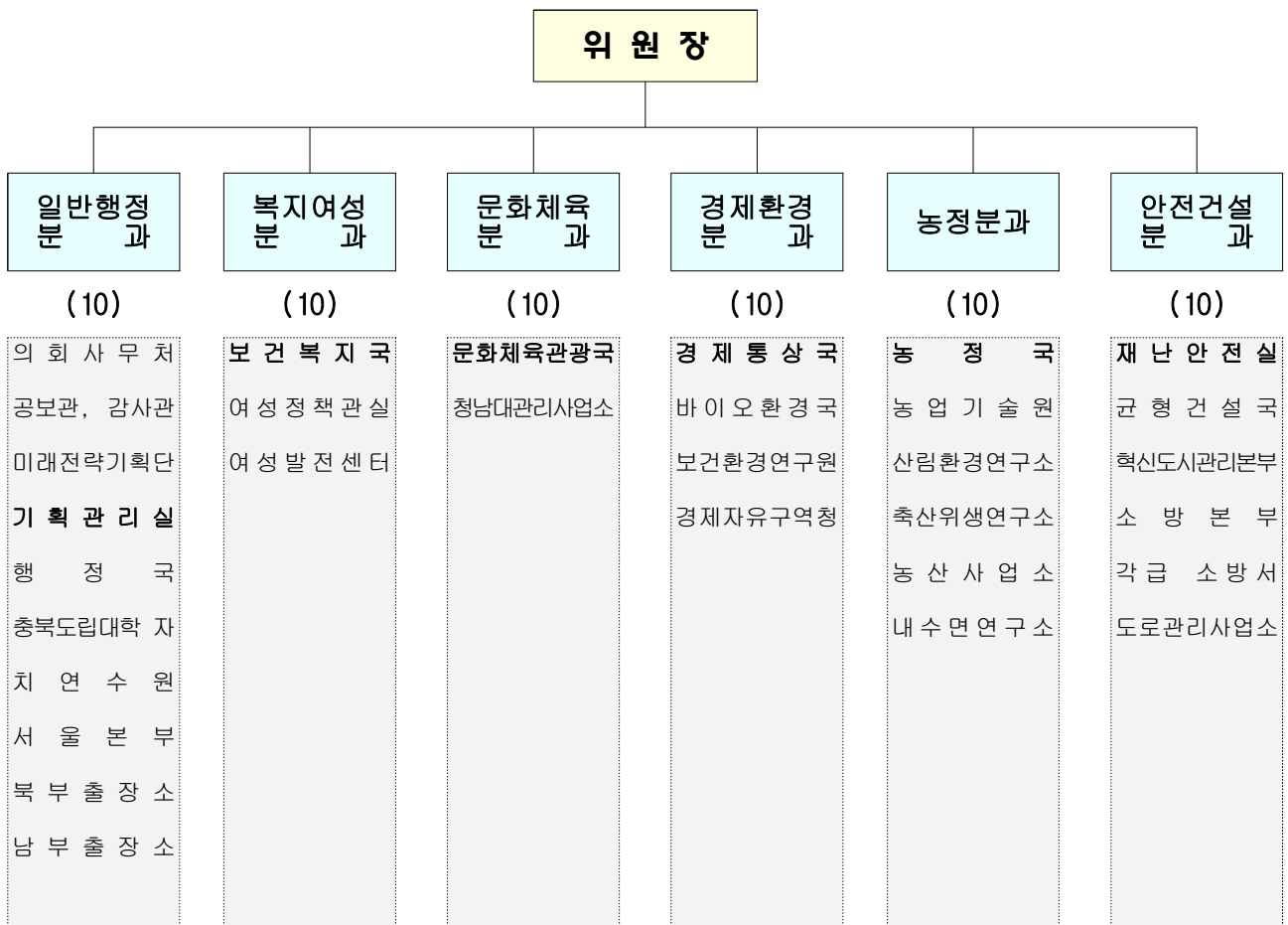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할

- 도 재정운용의 중점 추진사항 및 기본방향에 대한 의견제출
- 당초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수렴(재정투자사업에 한함)
 ※ 국고보조사업 및 경상적 경비,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제외
- 실·국에서 제시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 기타 예산편성과 관련한 건의 등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절차



□ 위원회 구성 현황 (개정안)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교육 현황

년도	회수	내 용	비고
2011	1	○ 주민참여예산학교(9.27) : 54명	제1기 위원회
2012	1	○ 주민참여예산학교(6.28) : 40명	제1기 위원회
2013	1	○ 주민참여예산학교(4.26) : 36명	제1기 위원회
2014	1	○ 주민참여예산학교(6.30) : 38명	제2기 위원회
2015	1	○ 주민참여예산학교 : 메르스로 취소 ○ 도시군 합동 도민참여예산워크숍(9.4) : 48명	제2기 위원회
2016	1	○ 주민참여예산학교(2.24) : 50명	제3기 위원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연임 및 예산연구회 임기 적용시점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나. 수정주요내용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규정 (부칙 제2조)
-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 (부칙 제3조)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 416 호
----------	---------

제안연월일: 2016. 7. 13.(수)
제안자: 윤은희 의원 등
(이광희 위원장)

수정이유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연임조항 개정에 따른 적용례 및 기존 주민참여 예산연구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의 규정을 두어 불분명한 위원들 임기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수정주요내용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규정 (부칙 제2조)
-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 (부칙 제3조)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연임된 위원을 포함한다)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주민참여예산연구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하되 임기는 기존에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안(개정안)	수정안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연임된 위원을 포함한다)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주민참여예산연구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하되 임기는 기존에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제4조” 를 “제5조” 로 한다.

제8조 중 “제6조” 를 “제7조” 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별표와 같이 설치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견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예산안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것으로 본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이하 “연구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지방재정분야 전문가, 사회단체관계자 등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③ 연구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④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관실 담당사무관이 된다.
- ⑤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제도 개선방안
 2. 주민참여예산제의 효과적인 홍보 및 활성화 방안
 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

제19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9조(운영협의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② 운영협의회는 위원회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 위원장은 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이 된다.
 - ④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2. 위원장이 긴급히 결정하여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협의회 심의 안건으로 부치는 사항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연임된 위원을 포함한다)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주민참여예산연구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하되 임기는 기존에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별표]

분과위원회 설치 및 소관부서(제13조 관련)

명칭	소관부서	
	주관실국	부서
일반행정 분과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의회사무처, 공보관, 감사관, 기획관리실, 행정국,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서울세종본부, 북부출장소, 남부출장소
복지여성 분과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보건복지국, 여성정책관, 여성발전센터
문화체육 분과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문화체육관광국, 청남대관리사업소
경제환경 분과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	경제통상국, 바이오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경제자유구역청
농정 분과	농정국 (농업정책과)	농정국, 농업기술원, 산림환경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 농산사업소, 내수면연구소
안전건설 분과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재난안전실, 균형건설국, 혁신도시관리본부, 소방본부, 각급 소방서, 도로관리사업소

* ()은 주무과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의견 제출 절차) ----- ----- <u>제4조</u> ----- -----.</p>	<p>제7조(의견 제출 절차) ----- ----- <u>제5조</u> ----- -----.</p>
<p>제8조(결과 공개) ----- <u>제6조</u>--- ----- -----.</p>	<p>제8조(결과 공개) ----- <u>제7조</u>--- ----- -----.</p>
<p>제11조(구성 및 임기) ① · ② (생 략) ③ ----- <u>연임할 수 있</u> <u>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u> <u>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한 차례만</u> <u>연임할 수 있다.</u></p>
<p>제13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 ----- -- <u>별표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u> <u>치한다.</u></p>	<p>제13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 ----- - <u>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u> <u>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분과위원</u> <u>회를 별표와 같이 설치한다.</u> 1. <u>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반</u> <u>영에 관한 사항</u> 2. <u>주민의견의 우선순위 결정에</u> <u>관한 사항</u></p>

②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 ⑦ (생략)

제18조(협의회 등)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3. 그 밖에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예산안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것으로 본다.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8조(주민참여예산연구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지방재정분야 전문가, 사회단체관계자 등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연구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관실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방안

2. 주민참여예산제의 효과적인 홍보 방안 및 활성화 방안

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

<신 설>

제19조(운영협의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는 위원회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

<p><u>제19조</u> (생략)</p>	<p><u>항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u> <u>2. 위원장이 긴급히 결정하여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사항</u> <u>3.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협의회 심의로 부치는 사항</u></p> <p><u>제20조</u> (현행 제19조와 같음)</p>
-------------------------	---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절차)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